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 **10. 25.**(금)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P/R/O/G/R/A/M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일 시: 2019년 10월 25일(금)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금태섭

◎ 후 원 : 법원행정처

◎ 프로그램

좌장: 이담 부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

• 주제발표

1.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 이용재 변호사 (산건 법률사무소)

2. 판결서 열람·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송오섭** 판사 (現 거창지원, 前 사법지원심의관)

• 지정토론

손지원 변호사 (오픈넷)

김숙정 변호사 (LKB파트너스)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건국대학교)

백상준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법부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사법, 소통하는 사법,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는 사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법원에 기대하는 변화를 찾기에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판결문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줄기차게 판결문 공개 확대를 요구했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문 공개를 과감히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3%, 각급 법원 판결 0.003%만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판결서 인터넷통합열람 제도를 통해서는 한번에 고작 1년 동안 선고된 판결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서사본 제공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신청하면 비실명처리 작업을 거쳐 받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특별열람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4대의 컴퓨터만 이용할 수 있고 프린트나메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고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법원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은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국민들은 소송 제기 전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회의원 **금 태 섭**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C/O/N/T/E/N/T/S

주제발표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		 	 1
이용기	대 변호	사 (산건 법	발률사·	무소)		

판결서	열람·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 몇 가지	고려사항	 15
송오섭	판사 (現 거창지	이원, 前 사법	지원심의관)	

지정토론

손지원	변호사 (오픈넷)	37
김숙정	변호사 (LKB파트너스) ·····	42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48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건국대학교)	60
백상준	입법조사과 (국회 입법조사처)	66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1

주제발표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

이용재 변호사

산건 법률사무소



2019년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과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의 남은 과제

이용재 변호사 (산건 법률사무소)

1. 들어가는 말

2017. 12. 5.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2018. 2. 22.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공동주최한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은 2018. 10. 8. 형사판결에서도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과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개별 법원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사이트에서여러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하나의 검색어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였고, 2019. 1.경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판결문 인터넷열람제도를 개편(이하 '2019년도 개편'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변경이 있었고(특히 형사판결에서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선고한 법원마다 별개의 법원사이트가 아니라 하나의 사이트에서 그것도 한번에 여러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하나의 검색어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용자편의성도 바람직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법원 외부에서 주장해왔던 내용 중에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2019년도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자 편의성이나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아래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2.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이용하여 비실명처리를 한 판결문의 공개문제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가 있지만, 2013. 1. 1. 이전에 확정된 형사판결, 2015. 1. 1. 이전에 확정된 민사, 행정 판결 등은 여전히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가 아니라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신청하고, 비실명처리를 거친 후 법원 담당자의 안내메일을 통해 수수료(판결문 당 1,000원)를 개별법원 계좌1)에 이체하고, 다시 담당자가 입금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신청

¹⁾ 큰 법원 같은 경우 사건 유형에 따라 계좌도 나뉘어 입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에게 보내주는²⁾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2013. 1. 1. 이후 선고된 형사판결, 2015. 1. 1. 이후 선고된 민사, 행정 판결 등이라 하더라도 아직 상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서사본 제 공신청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판결,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판결 등(이하 '판결서 인터넷 열람 대상판결'이라 합니다)은 법원의 통합된 사이트(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에서 대상 판결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에서는 개별 적으로 특정 판결문을 신청한 사람에게 전자우편(수령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선택한 경우, 이하 같음)으로 비실명처리를 한 판결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줍니다. 또한 이용해본 경혐에 따르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도 판결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되는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국민 중 누군가가 본인 부담으로 판결문 수수료를 납부하였고, 비실명처리를 마친 판결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 추가적인 비실명처리를 거칠 필요가 없게 이미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특정 사람에게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이미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이 들어와서 이미 비실명처리를 마친 판결문이라면, 추가적인 비실명처리를 거칠 필요도 없기에, 그러한 판결문을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에 업로드하면서, 개별신청이 아니라 법원이 마련한 시스템에서 바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비실명처리를 한 판결문을 법원내부시스템에서도 삭제하는 것이든, 혹은 내부에서 보관만 하고 외부 다운로드 링크에서 더 이상 다운로드 받게 못하게 한 것이든, 비실명처리를 거친 판결문을 손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국민 세금을 통해 지급한 공무원이 공적인절차를 통해 작성한 공문서를, 학술토론에 이용하거나 판결의 적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3.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의 기간 설정과 사용자 편의성

판결서 인터넷열람제도는 한번에 1년의 기간동안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특정 검색어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준비를 위해서나, 학술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 선고된 판결을 검색할 필요가 있는데, 1년의 기간이 너무 짧기에, 1년을 적어도 3년이나 5년 정도로 변경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서버 과부하의 문제로 현재는

²⁾ 직접, 우편, 모사전송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우편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³⁾ 다만 링크를 통해 신청한 사람도 판결문을 다운로드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비실명처리를 한 판결문 자체를 법원 내부에서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인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렵다면, 대법원이 2020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도에는 구축할 차세대 시스템 중 하나인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기간을 적어도 3년에서 5년, 가능하다면 10년 정도까지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검색기간 자체가 서버(시스템)의 처리능력과 연관되어 있어 당장 처리하기 어렵다면, 사용자편의성 관점에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론준비나학술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해의 기간 동안 선고된 판결문을 확인해야 하고, 결국 현재는 기간설정을 시기와 종기를 모두 클릭해서 1년단위로 검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년 단위로 기간을 바꾸면서 검색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의 버튼에서 직전 검색기간의시기와 종기를 1년 전, 1년 후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개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는 서버의 처리능력과 별개로 버튼 두 개(1년 전과 1년 후로 변경하는 버튼)를 추가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하는 정도로 바로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편의성 관점에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검색하면서 1년 단위로 시기와 종기를 선택하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과 불편의 정도를 현격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편의성을 크게 증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4. 수수료

예전부터 수수료 1,000원을 인하하거나 무료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제도와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이하 통틀어 '판결문 인터넷 제공제도'라 합니다)를 누가 이용하느냐를 두고, 법원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사건을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판결문 인터넷 제공제도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사건의 판결문 1건 혹은 상급심 포함해서 2~5건(파기환송 등을 감안)을 발급받는 데에 1,000원이나 많아야 5,000원 정도는 정말 경미한 금액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준비나 학술연구를 위해서는 단순히 1~2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 건이나 백 건이 넘는 판결문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4》 특히 논문 한 건을 작성하기 위해 십수 만원에서 수십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에 등록된 판결문은 비실명처리를 거치고 나서는,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와 달리) 법원 직원의 개입 없이 시스템에서 검색, 결제, 판결문 제공이 모두 이루어지는데, 판결문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정액으로 요구하는 것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⁴⁾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특정 사건의 재판준비보다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판결문의 수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한 판결문을 적은 사람이 신청하거나 많은 사람이 신청하거나 법원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 1건 발급받는 데에 1,000원의 인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판결문 정본으로 원본과 동일하게 기재된 경우와 달리,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판결문은 비실명처리를 완료한 판결문이므로, 원본과 동일한 판결문을 발급받기 위해 인지 1,000원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것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술연구나 판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판결을 입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는 이와 같은 많은 수의 판결문 입수를 부담스럽게 하여, 결국 학술연구나 판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한시민단체의 활동(이하 '판결감시활동'이라 합니다)을 어렵게 합니다. 비실명처리가 이루어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으며, 국민세금이 투입되어 작성된 공문서로,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5)과 법률이의 취지를 생각하면, 학술연구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는 폐지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에서 한 번에 결재할 수 있는 건수 - 5건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이용할 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기에 한 번에 결재할 수 있는 판결문의 수를 5건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결재시스템이 외국 아마존처럼 원클릭 결재시스템도 아니어서, 한번 결재할 때마다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는데, 수십 건 혹은 백 건 이상의 판결문을 확인하기 위해 5건씩 결재하면 실제로 판결문 결재하는 데에만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 검색기간의 제한도 아니고 한 번에 결재할 수 있는 판결문이 5건에서 6건이 되면서 어떠한 급격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번에 결재할 수 있는 판결문의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의 타당성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다양한 업체와서로 경쟁해야하는 민간서비스였다면, 5건씩만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속할 수 없다는 점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명백합니다.

⁵⁾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⁶⁾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재 건수의 제한에서도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바라보는 법원의 관점이 문어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건, 많아야 5건의 판결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람들이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도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학술연구나 판결감시활동을 위해 대단위의 판결문을 입수하려는 경우를 예상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경우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에서, 판결문 공개제도에 관한 법원의 비협조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결재건수의 제한은 조속한 시간 안에 아예 폐지하거나 제한건수를 적어도 10건에서 2~30건으로 변경하고, 2024년도까지 구축할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결재건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꼭 반영해주기를 법원에 부탁드리며, 법원 외부의 학계, 변호사협회, 시민단체나 국회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원에 요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판결문의 내용복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가

제3자가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은 판결문 속의 내용을 복사할수 없어서, 인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내용을 타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판서는 한컴 호글 소프트웨어로써 텍스트 문자로 작성되고, 형사 분야를 제외한 민사 등 다른 전 분야는 전자소송이므로 재판서의 원본은 그 HWP 파일을 변환한 PDF 파일에 전자서명값을 입힌 전자문서이며 이는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전자소송 기록뷰어를 통해서 그대로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 제3자도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에서 임의어검색이 가능하고, 특별열람실에서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를 이용해 판결문을 검색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문자 내용복사가 가능한 PDF 문서(text PDF)로 충분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장서면을 문자정보의 검색과 추출이 가능한 문서파일로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2017. 6. 29. 대법원규칙 제2747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이에 반하여 제3자는 학술연구를 위해 판결서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 입수한 수많은 판결문을 모두 일일이 타자로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판결문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판결문은, 보안속성으로 인쇄만 허용되어 있고, 문서 변경, 문서 어셈블리, 내용 복사, 액세서빌러티를 위해 내용 복사, 페이지 추출, 주석

⁷⁾ 이 부분은 오현석 판사(현재 인천지방법원)님의 의견에 도움을 얻어 작성하였습니다.

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⁹⁾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④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달기, 양식 필드 채우기, 서명, 템플릿 페이지 작성이 모두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암호보안이 설정되어 문서제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암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안속성에서 인쇄와 내용 복사만 허용하고, 다른 문서작업을 제한하는 방법이 가능하므로, 판결문의 내용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보안을 적용하면서도, 내용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판결문을 재판준비, 학술연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보안과 편의성을 조화롭게 증진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10)

7. 판결서 방문열람시에 개인정보가 아닌 사항의 기재도 금지하는 것의 개선

대법원 특별열람실에서 판결서 방문열람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열람실에서는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판결을 검색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건번호를 적어서 향후 판결문인터넷 제공제도를 이용해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문열람시의 준수사항으로 사건번호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적어갈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2건의 판결문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를 이용했다면, 사건번호만 적더라도 상관없겠으나, 학술연구를 위해 수십 건 판결을 확인했다면 쟁점별로, 혹은 중요도별로 개별 판결이 대략 무슨 내용인지 검색하면서 적어야 차후 판결문을 정리하여 학술연구에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건 혹은 백 건이 넘는 판결문을 검색하면서 쟁점을 확인하고 기재하였는데, 기재한 내용을 가져갈 수 없게 하고, 나중에 다시 수십 건이나 백 건이 넘는 판결문을 다시 읽고 분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방식인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아니라 어떠한 쟁점(예: 정보통신망법이나 고시상의 보호조치 중 어떠한 보호조치 위반이 문제가 되었는지 여부와 책임 인정여부 등)을 적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도 아닐텐데, 사건번호가 아니면 어떠한 내용도 기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판결서 방문제도 이용시의 준수사항 중 하나라고 안내되고 있는데, 정작 준수사항은 외부에 규칙이나 예규 등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규 제346호로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11 조11)에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며, 발표자 개인이 겪은 경험을 예로 들자면 사건번호 외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할 수 없다는 준수사항이 기재된 규정을 보여달라고 했

¹⁰⁾ 오현석 판사(현재 인천지방법원)는 2019. 5.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을 처음 지적하면서 확정판결인터넷열람제도(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확정판결서 파일 제공 방식을 text PDF로 변경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미확정 판결서 공개의 개선을 위한 공개기준과 면책근거 등 규정의 정비를 대법원에 건의하였습니다. http://blog.daum.net/mindfulrefresh/69 참조(최종 접속일 2019. 10. 19.)

¹¹⁾ 제11조 (위임사항) 특별창구를 이용하는 사람의 준수사항 등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도서관장이 정한다.

을 때, 법원 담당자는 출력한 규정을 보여주고, 본 발표자가 규정을 가져가려고 하니 규정을 보는 것 외에 가져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면서 회수하였습니다.12)

개인정보도 아닌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쟁점 등을 적는 것을 막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회수하여 반출을 금지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개인정보도 아닌 학술적인 내용도 기재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그와 같은 행위의 근거가 되는 준수사항(규정)을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고, 준수사항(규정)을 요청한 사람이 규정을 외부에 반출하는 것도 금지시키면서, 개인정보도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준수사항(규정)을 근거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위 준수사항(규정) 제공거부행위 자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8. 판결문 공개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실명처리의 예외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의 필요성¹³⁾

민사, 행정, 특허사건에 적용되는¹⁴⁾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 2558호) 제3조 제3호¹⁵⁾에서 비실명처리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을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4호¹⁶⁾에서 위 규칙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와 같은 의미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¹⁷⁾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 판결서 등의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09호) 제2조 제4호¹⁸⁾에서 비실명처리는 공개될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을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호¹⁹⁾에서 위 규칙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와 같은 의미임을

¹²⁾ 담당자는 처음에는 준수사항도 외부에 공개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해서 출력하라고 잘못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13) 2017. 12. 5.}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문 7쪽 이하 부분을, 해당 주제발표분 발표 이후 대법원 규칙, 재판예규 개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¹⁴⁾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¹⁵⁾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quot;비실명 처리"란 판결서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4. &}quot;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¹⁷⁾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¹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quot;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5. &}quot;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20)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21)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위 대법원 규칙들(대법원규칙 제2558호와 대법원규칙 제2809호을 통틀어 '이 사건 대법원규칙들'이라 합니다)에 따라 비실명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2018. 12. 28. 재판예규 제1709호로 개정되어 2019. 1. 14.부터 시행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은 제2조22)에서 사건관계인에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자연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23) 제1항에서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개인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의 성명이나 명칭도 비실명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도 비실명처리하는 것으로 비실명처리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24)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이 사건 대법원규칙들에 따르면 비실명처리의 대상은 (살아있는 개인의) 개인정보인 반면, 위 재판예규 제1709호(이하 '비실명 처리 기준'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도 비실명처리 대상이 됩니다.

²⁰⁾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²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quot;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²²⁾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 변호인, 제3자 소송담당자, 법정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참가인, 지배인, 피해자, 배상신청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소외인이나 공소외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자연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²³⁾ 제4조(비실명 처리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성명,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

^{1.}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을 포함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²⁴⁾ 그 이전의 2014. 10. 15.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었던 재판예규 제1489호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비실명처리한 다고 규정하여(제2조. 제4조). 법인의 명칭은 비실명처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²⁵⁾과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6항²⁶⁾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대법원규칙들과 달리 비실명 처리 기준은 법령의 위임을 명시적으로 받지도 않았고, 제정형식이 대법원규칙도 아닌 재판예규에 불과한데, 법령에서 비실명처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법인 명 등을 비실명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의 명칭도 비실명처리의 대상으로 삼은 법원의 태도로 볼 때, 이미 사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의 성명 등도 비실명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 성명 등으로 보아 비실명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7)

비실명 처리 기준이 법령이 아니고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에 선다면,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판결문은 비실명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송처림 피상속인과 토지소유자(사정받은 원시취득자나 일정 시기에 토지나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추정력이 인정되는 자)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소유자의 주소, 부동산 소유주소, 사람의 이름(한자 포함)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법원이 동일성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판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소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망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을 법원 외부의 학술연구자 등이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법원 담당자로서는 법령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실명 처리 기준을 따를 것이고, 판결 당시에는 사망하지 않고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기재된 판결문을 비실명처리에서 제외하는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특히 그중에서도 회사가 영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였다는 사실은 재산관계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판결 내용에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부분)에 한해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28)29) 비실명 처리 기준이 법인의 명칭도 비실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²⁵⁾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²⁶⁾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²⁷⁾ 다만 법원에서는 재판예규 제1709호로 개정되기 전에 재판예규 제1489호가 시행될 당시에도 자연인의 이름은 사망 여부를 불문하고 비실명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²⁸⁾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재판예규인 비실명 처리 기준에 우선하는 법령 제(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공개와 비공개, 비실명조치는 재판 공개의 원칙, 표현의 자유(알 권리), 학문의 자유라는 이익과 사생활의 비밀(프라이버시), 명예 등의 이익을 규범조화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편인 데30), 범죄피해자이거나 범죄가해자임이 드러나는 형사판결이나 이혼과 같이 가정 내의 분쟁인 가사사건과 달리, 재산분쟁에 관한 민사,31) 특허 사건이나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다투는 행정사건이라면, 재산분쟁(행정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보기는 어렵고, 국가의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공적인 판결문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사생활의 비밀이라고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일정한 시기(예: 10년, 20년)가 지났다면 판결공개의 이익이 더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실명조치를 거친 후의 판결을 공개하는 경우,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³²⁾ 부동산소송 같이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인 주소(행정구역과 지번)와 이름(한자 포함)이 가려짐으로써 판결공개의 의미가 사실상 없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면, 일정한 시간(예: 10년, 20년)

수 없다.

③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제한)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판결서 중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²⁹⁾ 일본에서도 지식재산권 사건에서는 법인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는 한국헌법학회,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의 헌법적 문제 및 그 해결방안", 법원행정처(2011. 5. 31.), 59쪽 참조.

³⁰⁾ 판결공개에서 충돌하는 이익에 관해서는 한국헌법학회,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의 헌법적 문제 및 그 해결방안", 법원행정처(2011. 5. 31.), 129쪽 참조.

³¹⁾ 민사사건이어도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 경우 여전히 비실명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

^{32) &#}x27;비실명조치를 합리적으로 하더라도 원본판결이 가져다주는 만큼의 공개이익을 가져다주지는 못하며, 비실명 판결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는 있더라도, 그 사건과 사실관계에서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나 그 사건과 같은 사회적 현상에 관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검색이 어렵고, 판결이 사회적 의미나 법리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한국헌법학회,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의 헌법적 문제 및 그 해결방안", 법원행정처(2011. 5. 31.), 150-151쪽 참조.

이 지나면 특정 유형의 판결(예: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은 이름은 공개하고, 부동산소송처럼 판결이유에 나타난 이름과 주소가 판결의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유의 이름과 주소 등도 공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나 판결문 공개에 관한 특별법(가제) 등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민사, 행정, 특허 사건 같은 재산분쟁(범죄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 제외)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기재된 사망한 사람, 일정한 시기가 지난 뒤의 사람과 법인의 정보는 공개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부동산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을 해야 하는 유형의 소송은 이름(한자 포함), 소유자 주소, 등록기준지(구 본적), 소유부동산 주소까지 공개할수 있게 해야 학술연구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9. 맺는 말

2019년 1월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판결문 공개제도의 확대로 현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여전히 제기되었던 문제점(개선사안) 여러 개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한 사용자편의성 관점에서 큰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여, 사실상 판결문 공개제도 자체의 효용성을 줄이는 내용들도 여럿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선점도 현재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장래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모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해 현행 비실명 처리 기준과 같은 재판예규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으나, 판결문 공개에 따른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법원의 태도(관점)를 고려하여,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의 재산분쟁에 관한 사람과 법인의 정보, 특정 유형의 소송(예: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다투는 부동산소송)에서 이름(한자), 주소도 (일정한 시기가 지났거나 사망한 사람의 정보로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명시하는 입법적인 제도개선을 국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발표

판결서 열람·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송오섭 판사

(現 거창지원, 前 사법지원심의관)



판결서 열람·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송오섭 판사 (現 거창지원, 前 사법지원심의관)

판결서 열람·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경과

- 2006. 5. 1.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시행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건의에 따라 판결공개 확대 계획의 일환
 -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인이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특별창구의 설치와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지속됨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국민 들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 이후 판결문 공개 경과에 따라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
- 2011. 7. 18.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공개 제도 규정(시행일 : 형사소송법 ➡ 2013. 1. 1. / 민사소송법 ➡ 2015. 1. 1.)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 허용
 - 2012. 12. 27.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및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제· 개정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 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 허용
 - 2014. 10.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제정

■ 현행 법제상 판결서 검색·열람의 허용 범위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 등 판결서와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판결서
 □ 1,
 2, 3심을 가리지 않고 모두 안터넷 검색·열람의 대상이 됨. 다만,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위 각 대법원 규칙에 따른 공개 예외사유가 있음
- 2012. 12. 31.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서와 2014. 12. 31. 이전 확정된 민사 등 판결서 다 제3자의 경우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에 따라 설치된 특별창구를 통한 검색・열람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결서 제공(정보통신망・방문・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함)이 가능함(다만, 가사 사건의 판결서,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

■ 2018. 8.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건의문 채택

- 1.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2. 판결서를 검색·열람하려는 국민이 선고 법원에 관계없이 각급 법원의 판결서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 3. 판결서 공개 범위에 관하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함께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모두 공개 함**으로써 재판공개 원칙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4. 공개된 판결서는 민사·행정·선거·특허사건의 판결서(이하 '민사 등 판결서') 뿐 아니라 **형사 판결서에 대하여 도 임의어 검색을 허용함**으로써 소송관계인이 아닌 국민도 판결서를 용이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5. 판결서 공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2019. 1. 1. 형사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검색·열람 대상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 강화
 - 2019. 1. 1.부터 형사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하여 종래 형사 판결서 검색· 열람을 위하여 피고인 성명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한 부분 삭제

- 2019. 1. 1.부터 확정된 민사·행정·선거·특허 및 형사 판결서를 <u>하나의 사이트에서 임</u> 의어 검색을 통하여 손쉽게 검색, 열람할 수 있게 되었음
- 판결서 열람·복사 시 수수료 부과 기준 통일(열람 1건 당 1,000원)
- 판결서 검색·열람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실명 처리기준을 개정함(2019. 1. 14. 시행)
 - 비실명 처리 범위에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을 추가하고, 주소에 대한 비실명 처리 방식에서 동, 호수를 비실명 처리 범위에 포함 ⇨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비실명 처리 범위에서 제외함 ➡ 판결의 공정 성과 투명성 제고

■ 2019년 확정판결서 인터넷 열람 현황(2019. 1. ~ 2019. 8.까지)1)2)

년도	민사 등(월 평균)	형사(월 평균)
2015	9,913(826)	38,603(3,217)
2016	31,376(2,615)	40,164(3,347)
2017	39,298(3,275)	47,175(3,931)
2018	72,618 (6,052)	67,814(5,651)
2019(1월~8월)	105,248(13,156)	54,075(6,759)

- 판결서 통합검색·열람시스템 도입 및 형사판결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해진 2019년 확정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9년의 경우 월 평균 민사 등 확정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 건수가 2018년에 비해 약 2배, 2017년에 비해 약 4배 정도 증가함

^{1) 2019}년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신청하고 결제한 건수 기준임.

²⁾ 형사사건은 2018년 이전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u>검색한 건수를 기준</u>으로 함(따라서, 실제 열람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을 것임)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검색·열람 신청 화면 예시〉3)

열람신청하기		대국민서비스 > 정보 > 판결서 인터넷열람 > 열람신청하기		
<u>판결서검색</u> 열람목록 경제목록 장바구니				
• 아래의 카테고리 중 원	하시는 검색 유형을 선택하신 후 검색조건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 선고일자(확정일자)	2018.10.18 교 2019.10.18 (세정대 1년까지 입력가능)			
법 원 명	선택			
사건번호	선택하세요 ▼ ※사건번호 전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가지번호 있는 판결서는 사건번호 검색 후 원하시는 판결서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 (원 사건번호 검색 시 관련 가지번호 모두 조회된)	있습니다.		
관련법령	□ 결과 내 재검색			
검색 어	□ 결과 내 재검색	에시		
단, 사건번호 전체를 (- 판결서 열람시 <mark>1건당</mark>	사건번호 또는 관련법정 또는 검색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할 경우 필수입력사항과 관계없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1,000월의 <mark>수수료</mark> 가 부과되며, 개인정보통이 비실명처리된 판결서가 제공됩니 <mark>결제건에 대해서만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mark> 검색 초기하	сь.		

〈형사판결서 검색결과 화면 예시〉

- 열람하기 원하는 사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³⁾ 대한민국법원/대국민서비스/정보/판결서 인터넷열람 화면임 민사 등 화면도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검색어 부분은 같음. 다만, 관련법령 입력을 통한 검색창은 없고, 사건유형(전체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을 체크(복수 체크 가능)하는 카테고리가 있음

Ⅱ 판결서 검색·열람제도 개선 시 고려 사항

1. 디지털 시대에서 판결서 인터넷 공개의 의미

■ 디지털 시대 정보의 특성

- 손실 없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가공시에도 품질이 저하되지 아니함
- 조작 및 변형의 용이하고, 하나의 선로를 이용하여 다수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음

■ 디지털 시대 판결서 인터넷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의 증가

• 디지털 정보의 집적성(集積性), 무한반복성, 가공용이성, 쌍방향성, 극저(極低)의 유통비용 등의 특성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은 종전 아날로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증가하였음

2. 판결서 인터넷 공개 확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판결서 공개 확대의 긍정적 측면

- 판결서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판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통하여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궁 극적으로 재판(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됨
- 재판의 절차와 결과가 공중에 알려짐으로써 국민이 법절차와 법의 지배정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소 제기 전 유사 판례 검색을 통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감소케 함으로써 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판결서 공개 확대의 부정적 측면

• 판결서 공개 확대로 인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판결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공범에 대한 수사 방해나 범죄 수법 모방으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해, 모방범죄의 가능성, 국가기밀 유출 등 공익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음

3. 우리나라 판결서의 특징

- 사실관계에 관한 설시가 판결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있 었던 내밀한 사실관계와 다양한 정보가 판결서에 현출되는 경우가 많음
 - ⇒ 영미의 판결서에 비하여 판결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현저히 높음
 -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 문제와 사실 문제의 구별(law-fact distinction)에 따라 사실 문제는 원칙적으로 배심이, 법적 문제는 판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하에 판결문의 사실 관계 설시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법적 판단이나 결론에 중점을 둠
 - 사실관계를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는 판결서가 없지는 아니하나 판시의 중점은 어디까지나 법적 분석에 두어져 있고, 형사사건 사실심의 종국판결문(judgment)에는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죄명, 범죄종료일, 양형 등만 간략하게 표시됨(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 등도 일부 편집되거나 봉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형사 재판의 경우 기소사실인부 절차에서 피고인이 불항쟁의 답변(nolo contendere)을 하거나 유죄(guilty)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 증거조사가 생략되고 바로 형선고절차를 거쳐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사실상 사실 문제에 대한 설시가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도 판결서에 범죄사실과 양형의 이유를 설시함

4. 비교법적 측면 - 각국의 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제도

가. 각국의 판결서 홈페이지 등 공개 현황

■ 미국

	홈페이지 등 공개 방법	공개의 범위	임의어 검색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연방정부인쇄국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료 공개, LexisNexis 등 사설 법률 데이터베이스 회사에 자료 제공(Project Hermes) 한 해 선고되는 판결 수가 매우 적음(100건 이하)	선고된 판결 전면 공개 원칙	연방정부인쇄국 홈페이지와 사설 데이터베이스에서만 가능

	홈페이지 등 공개 방법	공개의 범위	임의어 검색
연방항소법원	• PACER ⁴⁾ 시스템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일부로 공개 • 개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판결서 무료 공개	선고된 판결 전면 공개 원칙 (PACER의 경우 비공개 사례 발견)	PACER 시스템에서는 불가능 일부 연방항소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나머지 연방법원	• PACER 시스템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일부로 공개	선고된 판결 전면 공개 원칙	불가능
	• 개별 법원의 홈페이지, 연방정부인쇄국의 FDSYS, CourtWeb을 통한 무료 공개 참여(법원별 결정)	선고된 판결 전면 공개 원칙 (CourtWeb의 경우 선별된 판결 제공 명시)	일부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뉴욕 주	최고상소법원 및 • 통합법원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및 Westlaw 제공 • 사실심 법원 판결 등 선별기준 제시		가능
캘리포니아 주	• 공식 홈페이지 게시 및 LexisNexis 제공 • 미공간 판결도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명시	공간, 미공간 여부 불문 전면 공개	가능
매사추세츠 주	• 통합법원시스템 게시 및 LexisNexis 제공 • 미공간 판결도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명시	공간, 미공간 여부 불문 전면 공개	가능

■ 캐나다, 영국, 호주

	홈페이지 등 공개 방법	공개의 범위	임의어 검색
캐나다	• 대법원 홈페이지, CanLII 등에 게시	• 선고된 판결 전면 공개 원칙	가능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 BAILII 등에 게시 온라인으로 공개되지 않은 일부 하급심 판결도 법원 에 사본 청구할 권리는 있음	• 대법원의 경우 전면 공개하나 하급심의 경우 선별 공개	가능
호주	대법원 홈페이지, AustLII 등에 게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2000년 이후 판결은 선고 당일 판결이 온라인상 공간되는 것으로 명시 연방법원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검색조건 으로 검색 가능	• 대법원의 경우 전면 공개되는 것으로 보이나 기타 법원의 경우 각 법원 규칙에 맡겨져 있음	가능

^{4) &}quot;Public Access to Court Electric Record"의 약자이다.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홈페이지 등 공개 방법	공개의 범위	임의어 검색5)
독일	얼부 선별된 판결[공개할 이익이 명백한 경우]을 홈 페이지에 게시 원칙적 무료, 영리적 목적일 경우에만 유료 연방대법원의 경우 2000년 이후 판결은 이유 기재 없는 불수용 판결 또는 배제 판결을 제외하고 공개 함을 명시	• 선별된 판결만 공개 • 피고인과 증인의 인적사항 은 비실명처리 • 판사·검사·변호인의 성명 은 공개	가능
프랑스	• 일부 선별된 판결을 법률정보서비스 웹페이지 게시 • 파기원 홈페이지는 중요 파기원 판결을 게시	 파기원의 경우 전면 공개되나 하급심의 경우 선별된 판결 공개 사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는 비실명처리 판사·검사·변호인의 성명은 공개 미확정 판결은 미공개 	가능
네덜란드	사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선별적 공개 일부 사건 진행 경과도 게시 익명화 처리 기준 홈페이지에 게시	• 선별된 판결만 공개	가능
일본	 재판소 공통 홈페이지에 선별된 판결 공개 2008년 현재 최고재판소 판결의 공개율은 0.9% 하급심까지 포함하면 0.1%밖에 되지 않음 	• 선별된 판결만 공개	가능

나. 각국의 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제도의 시사점

- 미국의 법제도, 법문화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국의 판결서 공개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채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의 판결서 공개제도가 반드시 우리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배심재판, Plea bargain 절차 등 우리나라와는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서의 내용 및 판결서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의 위험도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법문화적 측면에서 미국은 'public records 공개원칙'이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어 판결서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의 요구가 크지 않음

⁵⁾ 다만, 위 국가들에서는 선별된 판결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확정된 전체 판결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고 있음

-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서 공개 요구 못지않게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도 높음. 즉,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포기한다거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용인하다고 보기 어려움
- 미국에서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만들어지는 기록에 나타날 수 있는 개인 식별정보의 편집 할 책임을 부담케 함.6)
 - ⇒ 반면, 우리나라는 소송문서 접수 시 당사자는 소송문서에 개인정보를 그대로 기재함.소송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임은 법원이 부담함
-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결문 인터넷 공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PACER 시스템에서는 임의어 검색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의 임의어 검색 가능 여부는 각법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전체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검색·열람이 가능하고, 2019. 1. 1.부터 임의어 검색이 가능함

■ 재판공개원칙에 대한 관점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

- 독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선례성 있는 판결만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제3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적 이익을 소명하여 법원장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인정됨.7)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도 판결서를 선별적으로 공개함에 있어서는 대동 소이함
 - □ 독일 등 대륙법계국가가 판결서의 제3자 인터넷 검색·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재판공개원칙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미국보다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다 고 비판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움

(a) 편집되어야 하는 기록.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납세자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미성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금융계좌번호, 집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 또는 종이문서를 제출할 경우, 당사자나 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다음 사항만을기재할 수 있다.

- (1) 사회보장번호, 납세자 등록번호의 마지막 4자리
- (2) 생년
- (3) 미성년자의 이니셜
- (4) 금융 계좌번호의 마지막 4자리
- (5) 집 주소 중 도시 혹은 주

⁶⁾ 연방형사소송규칙 49.1. 법원에서 만들어지는 기록의 개인정보 보호

⁷⁾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공개 원칙은, 누구나 재판의 변론기일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를 특별한 어려움 없이 알아낼 수 있고. 그에 대한 참석이 사실적 여건상 열려 있다면 그것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라고 함

- 우리나라의 법제도, 법문화에 맞는 판결서 검색·열람제도를 창안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2011. 7. 18.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확정된 판결서에 대한 제3 의 검색·열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음. 그러면서도 판결서의 제3자 검색·열람 허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결서 공개의 주체인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판결서 공개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 또한, 2019년부터 형사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이 허용되고,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공개 대상인 확정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음. 그리고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성명도 판결서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검색·열람의 대상이 되는 판결 서에서의 투명성 확보 요청에도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었음
- 현재 한국의 판결서 공개수준에 대하여, 비록 미국 수준에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일부 법원의 수준에는) 못 미칠지 몰라도 —그 공개범위와 인터넷 열람의 수단의 편의성을 고려해 볼 때—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임8)
-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의 판결서 검색·열람 범위의 확대 및 공개된 판결서에 대한 접근 성 향상의 과정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법문화,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 등 현실에 맞는 판결서 검색·열람제도 창안의 과정이었음
- 앞으로도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로 인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을 충실히 구현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현행 판결서 검색·열람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쟁점 검토

1. 미확정판결서 등의 제3자 검색·열람 허용 여부

가. 견해의 대립

 Π

- 민사 등·형사 모두 긍정론
 - 재판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근거 없는 억측 방지, 판결서 공개를 통해 국민적 여론 수렴,

⁸⁾ 전원열,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한국법학원, 2018 위 논문에서는, 전국을 통일하여, 확정된 전체 민사판결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는 곳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함

하급심 판시 법리에 대한 정보공유 욕구 충족 필요

-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서를 공개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 판례의 형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판결서 공개제도의 도 입취지 및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요청에 부합함
- 사회적 관심이 크고 언론을 통해 소개된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서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미확정 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시간이 경과하여 확정되면 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개 시기의 문제에 불과할 뿐 미확정 판결서와 확정 판결서 사이에 공개 여부를 달리할 본질적 차이가 없고, 공개의 범위나 분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확정 판결서 공개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프라이버시 보호는 비실명 처리 또는 비공개결정을 통하여 달성 가능함
- 공개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미확정 판결서 출력 시 워터마크 등으로 미확정 판결서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등의 방안으로 대처 가능

■ 민사 등·형사 모두 신중론

- 현재까지 누적된 사건의 판결서만으로도 학술적, 공익적 수요는 충분히 충족 가능
- 여론을 포함하여 사회 제세력에 의한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재판이 독립되어야 하는 근본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서 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공개된 판결서에 대한 과 도한 비난이나 유무죄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진행 중인 상급심 재판 또는 관련 사건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판결 선고 직후에 공개해야 하므로 비실명화 작업 및 판결서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거나 비실명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음
- 관련 사건의 소송관계인이 확정되지 않은 특정 사건의 판결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음

- 공적 인물이나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서는 별도의 방식(공개된 법정에서의 판결 선고, 각급 법원 공보관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게시)을 통해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음
- 현재 각급 법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사건에 관한 판결서는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제한적 긍정론(민사 등 미확정 판결서만 공개)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u>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u>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⁹⁾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9조 제1항 제4호), 이를 반영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제2조 제4항) ⇒ 형사 미확정 판결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
- 세세한 판결이유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상급심 재판에 과도한 영향을 줄 우려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더 증폭됨
- 형사 미확정 판결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상소심에 계속 되어 있는 경우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 보장의 가치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아니함
-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미확정 판결서가 공개되면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어도 당사 자에게는 이미 치명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는 데 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하므로¹⁰⁾, 미확정된 상태에서 판결서를 공개할 실익이 민사 등 사건에 비하여 크지 아니함

⁹⁾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침해가 중대할 필요는 없음 10) 최근 3년간 형사공판 사건 처리기간 현황(항소심/상고심)

년도	평균처리일수		
인도	항소심	상고심	
2016년	124.4	87.9	
2017년	125.2	80.0	
 2018년	139.9	80.5	
평균처리기간	129.8	82.8	

• 이와 같은 형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민사 미확정 판결서공개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 미확정 판결서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함

나. 사견

- ▷ 신중론 내지 민사 등 판결서에 한하여 제한적 긍정론임
- 판결서 검색·열람 범위 확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임
- 다만,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 비교·형량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헌법 하에서 미확정 판결의 당·부당에 대한 교정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선고한 직후의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음
 - ⇒ 즉, 미확정의 단계에서 판결의 당·부당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자제될 필요가 있음
 - 하급심 판결이 공정한 것이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확정판결이 공개되어야할 필연성은 없음. 오히려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 의해 직접적으로 당, 부당을 판단 받고, 그것이 확정된 이후 공정한 것이었는지를 사회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이 현행헌법체계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음
 - 소송당사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부의 개입 없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재판절차 및 심급 절차 내에서의 치열한 공격·방어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 내지 유·무죄 여부에 대해 판단 받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더 많을 것임
 - 미확정 판결서는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선례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음
 -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가 판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판결의 세세한 이유를 가지고 판결에 대한 꼬투리 잡기 나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흠집 내기,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함
 - 사회적(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법원의 공보체계 등을 통하여 판결의 결론뿐 아니라 쟁점에 관한 판단도 공개되고 있음
- 특히, 미확정 형사 판결서 공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 관련 문제

- 1) 검색・열람 대상 범위
 - 미확정 판결서를 검색·열람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판결서뿐만 아니라, 증거목록,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목록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 그러나, 증거목록, 검사·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까지 공개하는 것은 세세한 판결이유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상급심 재판에 과도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공개 요구에 따른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¹¹⁾할 우려가 크므로, 판결서에 한하여 공개함이 타당함

2) 시행시기 관련

■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인적·물적 여건 마련을 위하여 시행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음¹²⁾

2. 개인정보 보호조치 완화 또는 삭제 여부

가. 문제점

- 현행법 상 검색·열람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에 대하여는 열람·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나. 검토 ⇨ 현행 개인정보보호규정 유지

• 「개인정보 보호법」목적 등 전체적인 규정에 비추어, 위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보다 판결서의 비식별 처리를 삭제한 국민의 알권

¹¹⁾ 판결서가 아닌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조치 책임은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 있음

¹²⁾ 다만, 미확정의 판결서 공개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확정 이후의 판결서 공개의 부담이 감소하므로(즉, 공개의 시기가 당겨질 뿐, 법원이 공개하는 판결서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적·물적 여건 마련에 긴 시간이 필요치는 않을 것으로 보임

리가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제3조 제6항) ➡ 다른 공공기관 정보와 달리 판결서에 대하여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해도 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판결서의 특수성
 □ 당사자뿐만 아니라 증인(피해자), 감정인이나 그밖에 등장하는 사건관계인들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는 형사판결서 뿐만 아니라 민사판결서에 있어서도 동일함
-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정보의 일정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개된 법정에서의 재판과정이나 판결 선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은 불가피하며,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심리 절차를 거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완화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공개된 법정에서의 재판과장이나 구두로 판결서의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과 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의 사생 활 침해의 위험과 아무런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판결서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발 생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침해의 위험은 전혀 차워을 달리하는 것임13)

¹³⁾ 아래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한적 공간인 공개된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소송관계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구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그마저도 민사 등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대다수의 사건에서 이유의 요지 설명이 생략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현재 실무상 판결 선고 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 등의 성명을 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법정 방청을 하는 제3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기억이나 이유 요지에 대한 메모에 의존하여야 함)도 매우 낮음

[•] 형사소송법 제43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u>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u>

[•] 민사소송법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u>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u>

[•]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 등의 제한)

①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결서가 아무런 개인정보 보호절차 없이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소송관계인의 비공개 심리 절차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 경우 공개재판원칙 의 실질적 구현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판결서 제공 가부

가. 문제점

■ 공개되는 판결서를 제공함에 있어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¹⁴⁾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나. 검토

■ 현행 법원의 실무

- 2019. 1. 1.부터 공개하는 모든 판결서에 임의어 검색 기능 허용하고 있음
 - 다만, 국민들이 임의어 검색을 이용하여 선택한 판결서를 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된 파일은 gif 등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 기계 판독(수정, 변환, 추출, 검색)이 불가능함
- 판결서를 다운로드한 경우 기계판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다수의 판결서를 다운받아 필요 시 검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판결서의 편집·수정도 가능하게 되어 편집된 판결서가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면,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판결서를 제공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호법 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따른 폐혜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quot;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¹⁵⁾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¹⁶⁾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법원공무원의 형사면책규정 삭제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판결서 제공시 개인정보보호조치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완화하면서도 오히려 현재 규정과 달리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 업무와 관련한 형사 상 책임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음
- 개정안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조치 규정을 삭제한다면 담당 법원공무원의 업무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형사상 책임 면제의 필요성이 더 커짐에도, 오히려 개정안에서 면책규정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나아가 형사상 면책 규정 삭제 시 법원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판결서의 열람·복 사가 지체되는 등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 의도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함
- 현행법 제163조의2 제3항과 같이 형사상 면책 규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함

5. 검색·열람 대상 확정 판결서의 확대 문제

■ 현재「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결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상고기각 판결은 확정된 판결서의 경우에도 검색・열람 대상에서 제외됨 – 공개필요성이 미미하므로, 제외 유지(별다른 이견 없음)

^{15) &#}x27;민감정보'라 함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16) &#}x27;고유식별정보'라 함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1.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한다..

- 2012. 12. 31.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서와 2014. 12. 31. 이전 확정된 민사 등 판결 서의 인터넷 검색・열람 문제
 - 시스템별 판결문 전체 등록건수(2017. 3.기준)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형사	총합
20,722,549건	610,894건	495,438건	285,214건	3,827,419건	25,951,514건

- 전체 판결서 중 약 160만 건 정도만이 2017. 3. 현재 비식별화 처리된 상황임(5.97%)
- 현재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에 따라 설치된 특별창구를 통한 검색·열람과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른 판결 서 제공만이 가능함
- 선례적 가치나 학술 연구 등의 측면에 있어서는 미확정의 판결서보다 확정되었으나 아직 인터넷 검색·열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판결서 공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2012. 12. 31.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서와 2014. 12. 31. 이전 확정된 민사 등도 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현재 15% 정도의 정확률에 머무르고 있는 지능형 판결서 비식별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위한 검수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지정토론

손지원 변호사 (오픈넷)

김숙정 변호사 (LKB파트너스)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건국대학교)

백상준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필요성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법원의 국가 후견주의적 제도 운용의 문제

국민이 법원에 바라는 것은 판결문의 "공개"이지 "가공 및 배달"이 아니다. 발제문 각주에서는 "위 논문에서는, 전국을 통일하여, 확정된 전체 민사판결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는 곳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전원열,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한국법학원, 2018)"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하지만 당장 Westlaw 나 Lexis-Nexis에 들어가면 연방 +50개주 대법원+하급심 전체 판결을 하나의 검색창으로 모두 검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와 같은 분석이 나올 수 있었을까?

판결문 제공의 주체를 법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모든 일을 직접 하려고 하니 모든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국 법원이 저렇게 방대한 판결문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법원은 "공개"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주석 하이퍼링크등이 포함된 고급검색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연구용으로 쓸 사람들은 Westlaw나 Lexis-Nexis를 이용하면 되고 무료검색을 원하는 사람들은 https://law.justia.com/cases/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법원이 우선 "공개"만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조치도 민간이 AI에 투자해서 자동으로 이름을 순간인식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도 하고 판결 문 공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1)

2.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

2018. 2. 22. 금태섭 의원실 판결문공개 토론회의 박경신 발제에서 지적했던 판결문 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법원의 제도 개선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quot;Computer Aided Anonymization and Redaction of Judicial Documents",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January 2015 DOI: 10.2298/CSIS140808038S

- (1) "첫째, 형사는 2013.1.1.이후 민사는 2015.1.1. 이후에 확정된 판결서만 공개되고 있어 아직도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 판례들을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렵고," → 미개선
- (2) "둘째 미확정된 판결서는 공개대상이 아니어서 미확정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고," → 미개선
- (3) "셋째 형사는 임의어 검색이 불가능하여 판결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사건들을 비교하기 위한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 개선
- (4) "넷째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민사의 경우에도 85개²⁾의 개별법원 별로 검색을 해야 할 뿐 만 아니라," → 개선
- (5) "검색결과로 제시된 판결서를 읽어보기 위해서는 판결서당 1,0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한 지식습득의 자동화라는 목표가 실질적으로 사장된다고 볼 수 있다. 검색을 해본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원하는 자료 1건을 찾기 위해 최소한 100건 정도의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는 문서를 열람해보는 것은 상식인데 그렇다면 판결서당 1,000원이 아니라 1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미개선
- (6) "다섯째, 모든 판결서에 등장하는 당사자들 외에도 모든 등장인물 및 법인들이 비실명처리 되면서 판결서의 가독성이 매우 떨어진다."
 - → "비실명 처리 범위에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을 추가"함으로써 **개악**으로 평가됨. (법인명은 고유한 개인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음에 도 비실명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문이다.)
- (7) "법원도서관을 통해 사전에 예약을 하고 모든 판결문들을 (실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단 2개의 터미널이 열려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 → 미개선

결국 2018년 2월 이후 1년 반 동안 두 가지 부분만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차례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열람용에 대한 비식별화 자동화 및 완화

우선 미개선사안 (5), (6), (7)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열람용 비식별화와 등사용 비식별화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이다.

²⁾ 지방법원 본원은 25개지만, 지원별로 별도 검색이 필요하였으므로 85개로 보아야 함.

즉, 우선 열람만 하는 판결서에 대해서는 지능형 비식별화시스템(이하 AI)을 통해 순간 블라인 드처리를 하도록 하여 정확률이 100%가 아니더라도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 이렇게 하면 도서 관 열람이나 인터넷 열람이나 동등해진다 - 실제로 복사(프린트)하는 경우에만 수동 익명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 등사용 판결서당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등사용 익명화 작업이 이미 이루어진 판결서는 도서관에서 열람/등사요청이 되든 인터넷에서 열람/등사요청이되는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 AI 비식별화 정확률은 15%라고 하는데, 일단 어느 수준의 정보를 비식별화 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다. 우선 지금까지 기 비식별화된 판결서들과 원판결서 모두를 AI에 제공하여 비식별화 기술을 스스로 고도화하고 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식별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비례성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정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이는 아래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지금처럼 열람 단계에서 판결서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예산을 확충하려 하지 말고,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결문 공개를 원하는만큼, 국회를 통해 판결문 공개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과거판결문 및 미확정판결문 비공개 사유 - 법원에 대한 공격 우려?

미개선사안 (1)과 (2)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발제문에서는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대해 과거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비공개 사유로써 "오히려 판결의 세세한 이유를 가지고 판결에 대한 꼬투리 잡기나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흠집 내기, 인 신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 역시 공무원이며, 법관이 행 한 재판에 의해 국민들 개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막강한 힘 을 가진 지위와 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법원이 수인하고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이것 이 비공개의 적절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과거 판결 공개 부분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이 역시 AI의 정확률에 의한 한계를 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정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선공개하고,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프라이버시 법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개인정보임을 고려하여 엄밀도를 낮추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5. 비교법적 문제들

미국 제도를 거론할 때 비교대상으로 PACER를 논하며 PACER에서의 실명공개가 제한된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나 PACER는 '소송기록'전체를 열람하기 위한 시스템이라서 공개가 제한되고 있을 뿐 판결문은 법원이 직접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WestLAW, Lexis, Findlaw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무료 또는 유료로 실명 및 검색가능 상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이 원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판결문' 공개에 있어서 PACER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발제문상의 표는 다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연방대법원, 연방항소법원, 나머지 연방법원 모두 법원의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판결들 외의 모든 판결을 Westlaw, Lexis, Findlaw등의 다양한 웹사이트에 무료 공급하고 있고 이 웹사이트들을 통해 국민들은 기간제한, 회수제한, 장소제한 없이 판결문에 접할 수 있다.

독일의 판결문공개시스템에 대해서도, 발제문에서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가 판결서의 제3 자 인터넷 검색·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재판공개원칙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미국보다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단한 영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3)들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외의 독문으로 된 독일 내의 비판적 견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호주, 캐나다는 한국, 유럽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면적인 실명 판결문 공개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위규제가 아니라 위험규제이다. 즉,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소유"한 정보로 인정하고 그 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의원래 목적인 프라이빗(private)한 정보를 동의없는 취득이나 제3자 공개의 위험을 최대한 막기위해 대량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정보통제자(data controller)들에게만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한것이다. 이런 이유로 호주,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법우선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자가 적법하게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재판공개원칙에 따른 공개범위를 정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무엇인지는 대법원이 국회입법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서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는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리에 따

³⁾ Tom Braegelmann, "Lack of Data, Lack of Law"

라, 이를 집요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수집을 피할 수가 없는, 상대적으로 보호법익이 낮은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비식별화 수준의 완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제안한 열람용 비식별화와 등사용 비식별화의 구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례성 있는 범위내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판결서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해서 비례성있는 수준으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래 구성원리와도 화합한다. 개인정보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유 일 뿐이다. 처음 개인정보보호규범을 만들던 사람들이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하면서 정보이용 및 공개의 범위를 미리 협상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제를 디폴트(default)로 정하여 힘없 는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소유"한 것처럼 권리관계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는 그렇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예 를 들어 '김철수는 OOO이다'라는 구조를 가진 모든 문장들은 문장 하나하나가 각각 김철수가 그 문장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는 개인정보를 구성하게 된다. 주어 가 살아있는 개인인 한,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가진 모든 문장은 주어가 지칭하는 사람에 대 한 개인정보가 되며 그 개인이 통제권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김철수는 과학자이다'는 정보를 입수하려면 김철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이렇게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 거나 전달하려하여도 김철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말하 고 들음에 있어서 그 타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통제 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는 포기되어야 한다. 모든 표현은 정 보의 처리이고 그 표현이 타인에 대한 것일 경우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 법리는 민주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판결문 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김숙정 변호사 (LKB파트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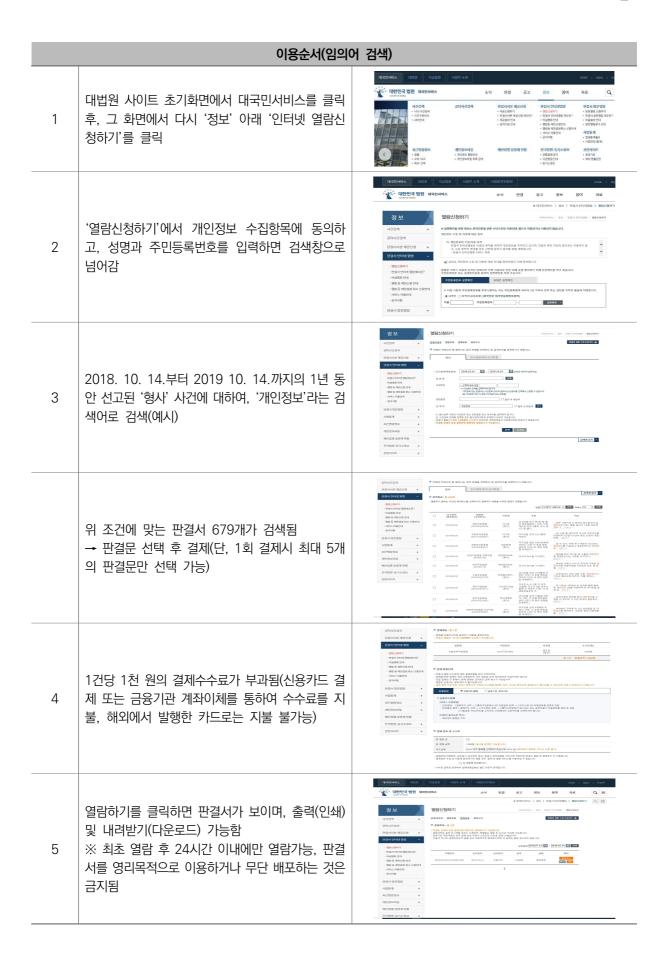
1. 판결문 공개제도 현황

1)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통한 판결서 공개 현황

-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http://glaw.scourt.go.kr)를 운영하며 일부 판결서를 공개함
 - 이른바 '선례적 가치 있는 판결',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 급 법원 판결의 0.003%만이 이 사이트를 통해 공개됨
 - 종합법률정보 외에 '판례속보' 제도를 통해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 요지와 전문이 공개되고(월 3-5회 공개, 그중 1회는 전원합의체 판결), 그중 대부분이 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됨

2)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판결서 및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판결서는 인터넷 으로 열람이 가능함
 - 판결의 확정을 기다린 후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므로 열람 시기가 매우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법원은 소위 주요판결(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판결서를 공개하기도 함
 -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해당 법원의 판결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으나, 2019. 1. 1.부터 하나의 사이트인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에서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에 대한 일괄 열람·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정비됨
 - 종전에 민사판결서에 대하여만 적용되었던 '임의어 검색'서비스가 2019. 1. 1.부터 형사판결서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를 입력해야하는 불편함 이 해소됨



3) 판결서 방문 열람 제도(대법원 도서관에서의 검색)

- 대법원 도서관을 직접방문하여 판결서를 열람하고 사건번호를 메모한 후 판결문 사본 제공을 신청하는 방식임
 - ① 2주 전 미리 예약, ② 대상자 제한, ③ 판결문을 검색·열람만 할 수 있고 복사 불가, ④ 현재 4대의 PC만 이용 가능하다는 문제점
 - 업무 담당자가 신청자의 검색·열람 신청을 승인한 경우, 신청자에게 검색 ·열람을 할일시 및 장소를 통지 →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서 검색·열람 가능하나, 이용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제한됨

4) 판결서 사본제공신청 제도('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

-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법원행정 처 및 각급법원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 사본이 신청인의 청 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됨
 -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알아야 하고,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수수료 1,000원이 부 가된다는 단점이 지적됨

2. 공개재판주의와 판결문 공개제도

- 헌법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제27조 제3항에서 형사피고인이 지체없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9조에서 법원의 재판에서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27조 제3항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이 제109조이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헌법상 재판의 공개와 관련한 근본적 규정은 제109조로 볼 수 있음
- 재판공개원칙은 이미 제헌 헌법부터 명시되어 있었고(제헌헌법 제83조 "재판의 대신과 판결은 공개한다."), 현행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심리는 비공개로 정할 수도 있지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헌법 제109조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① 여론의 감시 하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②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③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 헌법이 선언하는 "심리와 판결의 공개"는 ① 일반인이 법정에 직접 가서 물리적 방청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② 재판과정의 촬영·방송을 통한 외부공개를 의미할 수도 있고, ③ 재판 결과(판결의 내용)의 외부공개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④ 재판기록의 외부공개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해석됨
 - 위 ③의 '재판 결과의 외부공개'에서의 핵심이 바로 '판결문'의 공개임
 - 판결선고 법정을 일반인에게 열어두고 선고를 청취하게 하더라도, 법원은 판결주문 낭독 외에는 아주 간단한 판결 이유를 구술할 뿐이어서, 판결 이유를 청취와 동시에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움(심지어 낭독되는 판결주문조차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법정의 공개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음)
 - 헌법 제109조의 이념인 재판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국민이 판결문 공개를 통해 판결 이유를 알 수 있어야 가능할 수 있음

3. 개선을 위한 제언(발표문에 대한 첨언)

1) 판결문 입수에 있어 여전한 불평등

- 민사의 경우 2015. 1. 1. 이후 확정된 판결만이, 형사의 경우 2013. 1. 1. 이후 확정된 판결만이 인터넷 열람제도의 적용 대상이므로, ① 종전에 확정된 판결문과 ② 미확정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원도서관 특별창구를 방문하는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를 이용해야 함
 - 1·2심을 거쳤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실상 판결문을 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판결문이 확정되었더라도 실명으로는 판결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임
 -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는 시간 및 장소적인 제약, 대상자의 제한 등 이용 가능한 인원이 극소수로 제한됨
 - 반면,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내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판결문 입수에 있어서도 여전히 전관예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상황임

- 일부 변호사들은 심지어 사설 업체를 통해 판결문을 구입하기도 함
 - 사설 법률정보 사이트 이용료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 판결문 제공횟수나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데, 사건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이 판결문을 비실명화한 뒤 이를 해당 사이트에 올리는 것으로 알려짐

2) 입수의 비용이성

- 대법원이 판결문 검색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매 판결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수수료 지불 역시 1회에 5건으로 한정되어 있음
- 판결문 검색 시 600자로 제한되는 간략한 요지만 보여 원하는 판결문을 찾기가 어려움 (원하는 판례를 찾기 위해 수십 건을 결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4. 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

"변호사님, 하급심 판결문은 어떻게 해야 검색할 수 있나요?"

-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는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과, 공판관여를 한 검찰이 각각 구축한 시 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음
- 변호사는 법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절차(위 1. 판결문 공개제도 현황), 각종 유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입수함
 - 그 외에 법원, 검찰의 내부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금태섭 의원이 지적한 형사절차에서의 전관예우 관행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수사를 하는 경찰은 일반 국민들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는 방법으로 판결문을 입수함
 - ① 법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절차, ② 로앤비 유료회원, ③ 내부망의 법령정보시스템,
 - ④ 내부망의 질의·응답 시스템
 - ② 로앤비의 경우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관서마다 예산에 따라 회선을 받아써야 하는 문제가 있음(수사부서에 로앤비 접속 가능한 컴퓨터가 제한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접속할 수 있는 사람도 팀장 및 일부 수사관으로 제한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 ③ 내부망의 법령정보시스템은 입수하여 관리중인 자료가 한정적인 문제로 이용자들의 실익이 크지 아니함

- ④ 내부망의 질의·응답 시스템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간부들에게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질문을 올린다고 해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 절차로 판결문을 입수하여 답변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기준시점 이후 확정된 판결서를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커졌으나, 검색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1년으로 제한되어있는 검색기간의 설정, 600자 제한 설정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용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
 - 수사관이 사건을 배당받아 사건관계자들 조사, 압수수색, 현장출동, 기록 정리 등을 한 꺼번에 진행하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하급심 판결문 검색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
- 기준시점 이전 확정된 판결서 및 미확정 판결서 역시 경찰은 일반인과 다름없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사결과보고 또는 의견서에 만연히 대법원 판결문의 판시 내용만 보고 사안을 무리하 게 적용하는 문제를 인식하여, 경찰 내부에서도 하급심 판결문입수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고 있음
 - 하급심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쟁점,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의 논리 등 수사중인 사 건과 면밀히 비교하여 사안에 적용할 필요
- 경찰은 공판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유사사건을 검색하고 송치하여 도, 검사가 하급심 판결문 찾아 새로운 쟁점에 대해 수사지휘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이는 수사력의 낭비, 국민들 입장에서도 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수사받아야하는 불편 함 초래
- 유사사안에 대한 판결문 검색을 통해 쟁점, 수사방향 등 신속하게 정리하여 수사진행할 경우 경찰,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거나 불필요한 수사지휘 줄일 수 있고, 장기간 사건이 방치되는 것 줄이며, 사건당사자인 국민들이 중복하여 조사를 받는 불편 함 줄일 수도 있음
- 수사권조정, 사법개혁의 거대한 담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만, 법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경찰과 공유할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으로 보임
- 판결문 공개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결국 법원, 검찰 어느 쪽이든 수사를 하는 일부 경찰에게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2019년 3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중 발췌)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 **소위원장 송기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 정 제4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4쪽입니다.

열람·복사 가능한 판결서 범위 확대의 경우 이 내용이 형사소송법 금태섭 의원님 발의안과 주 광덕 의원님 대표발의안도 있고요 또 금태섭 의원님 발의하신 민사소송법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형사소송법 첫 번째 꼭지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이문한 전문위원이 관련되는 내용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4쪽, 두 분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확정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현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라고 되어 있는데 금태섭 의원님 안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이 아니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안은 마찬가지로 판결이 현행의 '확정'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하되 '다 만 판결확정 전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서 또는 등본만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 및 복사가 불가능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재판 공개의 원칙이라든가 사법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명예훼손 우려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개 예외 규정을 별도로 정비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판결서 공개에 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는 일반적으로 판결 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륙법계의 경우 중요 판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5쪽에 작은 글씨로 된,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발전위원회의 미확정 판결서 공개와 관련된 찬 반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성론의 경우 민사 판결서만 공개하게 되면 관련 사건이 민형사 모두 계속되어 있을 때 한쪽 판결서만 공개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하급심 판시 법리에 대한 정보공유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 가 있으며 전면적 공개가 사법 발전 방향에 부합하며 판사들로 하여금 신중한 업무처리 효과가 기대된다는 미공개 판결서 공개 찬성론이 있습니다.

이와 대등하게 신중론의 경우 형사 미확정 판결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상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과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판결서가 공개되면 결론이 바뀌어도 당사자는 이미 치명적 손해를 받을 우려, 형사 미확정 판결서의 경우 공개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있으므로 민사 확정 판결서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문한** 민사소송법과 관련해서도 금태섭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취지로 민사 판결문도 공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의사일정 4항 관련된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검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민사 판결서는 형사 판결에 비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덜 받기 때문에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민사 판결서 공개에 대해서는 다수 의 찬성론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개하는 과정에서 역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보호와 관련돼서는 신중 검토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송기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차관 김오수** 먼저 형사소송법 관련입니다.

전체적으로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면 사생활 비밀침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고 또 이러이러한 여러 부작용들을 생각한다면 공개 여부를 판사가 검토하게 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고요.

민사 판결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송기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크게 보면 형사나 민사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공개로 인한 부작용의 측면에서는 형사가 조금 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판결을 왜 공개 안 하느냐, 판사들이 잘못을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결국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공개로 인한 2차적 피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돼 있는데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올 1월부터는 일반인들이 임의어로 판결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는 쪽으로 간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안을 내 주셨는데 저희는 이미지 파일로, 수정은안 되는 그런 파일로 하고 있는데 수정까지 가능하게 되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실제로 판결서 위조해 가지고 하는 범죄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개가 되려면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공개로 인한 법원 직원이나 판사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분명하게 두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송기헌** 올부터 한다는 것은 확정된 판결을 공개한다는 거지요?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아닙니다. 미확정 판결을······
- **소위원장 송기헌** 미확정까지, 선고된 판결 다 검색할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예.
-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태섭 위원** 차관님하고 차장님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개념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지금 판결은 공개되지요? 헌법상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109조에 보면 "재판의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판결은 대법원장의 명령에도 공개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그게 미확정 판결을 포함한 모든 판결이냐, 아니면 확정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 **금태섭 위원** 그러면 법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이 헌법 제109조 본문이 미확정 판결에는 적용 이 안 된다는 취지이신가요?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아닙니다.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의견대립이 있다는……
- **금태섭 위원** 그러면 미확정 판결도 공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설이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의 의견이 어떠신지……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미확정 판결을 포함해서 헌법에서 공개한다는 판결에 포함되느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 **금태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른 예외규정이 없고 심리에 대해서는 헌법이 직접 예외까지 규정한 걸로 봐서 모든 판결이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관행을 보면 차관님이나 차장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은 개인정보 보호나,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공개법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앞에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전부 법 위반이란 말입니까? 그런 염려가 있으면 아예 공개를 안 하고 판결도 비공개 선고를 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찾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성폭행 사건이거나 이럴 때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청객 나가라고 하는데 판결 선고 때는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이 맞다면 선고 때 방청객을 못 들어오게 해야지요.

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배치될 염려가 있으면. 지금 대한 민국 판사들이 전부 위법하게 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법원이 그냥 판결문 공개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차장님, 어떠세요?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공개를 할 경우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공개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견해는 저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저는 그냥 헌법에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만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판결을 많이 선고하니까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제가 다 수용할 용의가 있는데, 이걸 3년째 주장하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자는 거지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만 하시고 뭘 하면 이게 부작용이 없어질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지금 공개할 때 비실명화로 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그 비실명화 작업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 **금태섭 위원** 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지금 헌법에 판결은 비실명화해서 공개한다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이름이건 참고인 이름이건 이름을 얘기하지 뭐 피고 인은 A 소유의 뭘 훔쳤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실제로 실명화한 판결을 선고하는데 왜 그것을 판결문으로 받을 때는 비실명화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냥 액면 그대로 공개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법원도 편합니다.
-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2차적 피해 이런 부분 또 관련 법령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 **금태섭 위원** 그러면 지금 법원 측의 공식 견해는 판사님들이 법정에서 비실명화가 되지 않은 판결문을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 앞에서 낭독하거나 하는 게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우선 형사의 경우에 판결서 공 개하고 판결내용 공개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 소위원장 송기헌 잠깐,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헌법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판결 선고하는 것을 공개한다는 것이고 판결문은 또 다르게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 금태섭 위원 아니, 제 의견을 정리해 주실 필요는 없고……
- **소위원장 송기헌**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너무 집중해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쪽 으로 말씀하시면……
- **금태섭 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송기헌 너무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태섭 위원 아니, 주장이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 **소위원장 송기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태섭 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회의에서 이것을 질문드리고 법원행정처의 견해를 못 들었는데, 지금 판결 선고를 물론 판결문 다 읽으시지 않지요. 요지를 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판사가 '나는 판결은 판결문 글자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고 자기 판결서를 죽 읽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판사님들도 계세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견해입니까? 개인정보 침해사유가 있으니까 요지를 고지하는 형식의 판결 선고만 가능한 것이고 모든 판결을, 판결문을 법정에서 낭독한다면 그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견해입니까?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그런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금태섭 위원** 그런 입장은 아니지요?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실제로 선거 주요 사건은 선고과정을 생중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판결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게 만약에 위법하다는 입장이라면 그 자체를 할 수가 없겠지요.
-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에서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염려가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엘리트주의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법원의 판사님, 검사님하고 방청객들은 또 그 공간에서는 가능한데 밖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것이 이 법안을 반대하시고 신중 검토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판사가 자기 법정에서 판결문을 한 자도 안 빼고 낭독하는 것을 계속 그 관행을 매일 선고 때마다 되풀이한다면…… 그중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 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법정에서 다 되니까 우리가 판결문도 받아 보자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판례가 몇 개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걸리는데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통해서 그 판결문의 실명화된 부분 때문에 그 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 침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사례를 판사가 그러면 법정에서 말로 했을 경우에 그때는 위법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원이 이것을 자신이 없어서 못 내는 것 아니냐? 그것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공개했을 때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왜 법원에서 이것을 막 줘 가지고 내 신상이 공개되게 했느냐, 인터넷에 신상이 털리고 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만 면제가 된다면 법원에서는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소위원장 송기헌** 주광덕 위원님.
- **주광덕 위원** 차장님이나 차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그리고 또 금태섭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요지는 잘 전달이 됐지요? 누가 봐도 헌법에 공개재판주의 그다음에 금태섭 위원이 인용한 109조의 취지에 의하면 헌법의 내용으로 봐서는 공개가 원칙이고 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도 판결문 공개 여부에 관한 앞으로의 방향은 공개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다, 두 분께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시면서 레토릭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개정안을 낸 사람으로서 금태섭 위원이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향도 맞고 헌법가치에도 부합하니까 하는데 지금 우려되시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한번 차장님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저하고 금태섭 위원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좀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소위원장 송기헌 저도 그래서 추가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원에서 걱정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거나 그런 데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시고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럴 생각을 갖고서 얘기한 다는 거지요.
- 주광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을 좀 만들어 오시면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만들어 오시면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번에 안건으로 올려주시 면 다음번을 이용해서, 3년이 걸렸으니까 더 기다릴 수 있어요.
- 소위원장 송기헌 차장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취지도 또 공개하는 쪽으로 확대한다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비실명화 처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과 이것이 소요된다는 어려움, 현실은 있는 것 같아요.
- 금태섭 위원 아니, 지금 비실명으로 하지 말고 공개하자는 거예요.
- 소위원장 송기헌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부분의 개정이 또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우리 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음 소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저희가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100%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 구체적인 안을, 의견을한번 만들어,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의 개정까지 포함해서 한번……
-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오시라는……
- 소위원장 송기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예훼손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책임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공개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그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을 토대로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송기헌** 그건 다음 위원회 때 의견 낼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예.
- **금태섭 위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신상이 털린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성폭

력 피해자 주소까지 다 나온다든가 이런 건 문제인데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작성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법원이 떠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조치가 있으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건데 헌법에서 어쨌거나 심리는 몰라도 판결은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에서 우리가 욕먹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요. 이 안을 법원에서 가져오실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음번 회의에 꼭 안건으로 좀 올려 주십시오.

○ 소위원장 송기헌 예.

다른 위원님도 추가로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판결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 1996년 이후 대법원 판례 전문을 공개하는 한편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정보-판결서 방문열람-방문열람 신청하기'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하는데, 2주일 이내에서만 예약을 할 수 있어 늘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판결문 방문열람 예약이 대학교 수강신청보다 훨씬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흔할 정도입니다. 또 열람 승인을 받은 뒤 이용일 전날까지 직접 취소하거나 취하의사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미방문 횟수가 2번일 경우 30일간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기일이 변경되는 등 수시로 일정이 변하는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마저도 전국에 서초동 대법원 도서관 1곳에서만 검색이 가능한데다가, 단어 검색을통해 판결문 열람을 직접 할 수 있는 단말기도 단 4대 뿐입니다. 한 사람당 이용시간은 1시간반으로 제한됩니다. 이때에도 판결문을 바로 출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검색·열람하는데 주어

진 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종이와 펜을 이용해 선고법원과 사건번호만 적어온 뒤 따로 열람 신청을 하거나 판결문을 찾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판결문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등의 행위 역시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간주, 퇴실 조치 후 향후 사전 예약도 할 수 없게 되고, 직접 방문 열람도 금지됩니다.

특히 변호사들조차 1·2심 판결문을 통해 법리 등을 파악하기는커녕 열람조차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맡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참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조차 "법원에 있을 때에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판결문을 구하기 위해 애를 먹는지 몰랐다"고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인력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우선 선별해 사람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처리 작업을 마친 판결문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약 3%, 각급 법원 판결의 약 0.003%만 공개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개되는 판결문이 극소수에 그치는 이유는 판결문에 등장하는 실명 역시 개인정보보호 법상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판결문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법령상의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결문 공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 현재 서울 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3건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판결문 공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꼽았습니다. 특히 판결문 공개로 인한 법원 직원이나 판사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분명히 둬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2월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만 제한하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 1년 후인 지난해 2월 금태섭·민병두 의원과 (바오픈넷이 개최한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

한 판결문 공개 방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는 33개 법원이 각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 중 24개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그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는데,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여러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형소법 및 민소법에 따라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에도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즉, 법원명을 특정해야 함)되며, 원칙적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공개범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를 위해서는 법원명 이외에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해야 하고,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재판 공개의 원칙 및 사법절차의 투명화 등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이에 따라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대법 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산물로 올해 1월부터는 별개의 법원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사이트에서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에서도 임의어 검색이 가능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름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7년 8월 법사위 1소위에 회부된 이후 1년 반도 넘은 지난 3월 25일에야 처음으로 1소위에 상정·논의됐지만, 후속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3월 25일 이후 1소위 회의가 열린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해 고려돼야 할 점과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 두 분께서 충실하게 설명해 주신 만큼, 더 가감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사무와 사법정보 공개 혁신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5년간 총 1562억원을 투입해 법원 내 재판사무시스템과 전자소송 기능을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사법통합민원포털, 사법정보공유센터, 사법정보공개포털, 빅데이터플랫폼, 지능형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추가 개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판결문 등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사법정보공개포털'의 경우 키워드 몇 개로 판결문을 간편하게 검색해 국민들의 편의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금처럼 대법원 규칙이나 예규가 아닌 법률로 판결문 공개 방침을 정해 관련 사업 로드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도중에 법률이 개정돼 그에 맞춰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땜질식 처방'이 이

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면 사건당사자 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법부 견제를 위해 언론과 시민의 판결문 분석을 통한 감시도 더욱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전관예우 논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판례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높은 단계의 인공지능(AI)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반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 선진 국가들처럼 법률상 공개가 금지된 판결이나 판사의 개별적인 조치에 따라 공개가 금지돼 있는 판결문 등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문에 대해서는 검색을 통한 열람·복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민간에서 판결 정보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사업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공개에는 정보공개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세심한 논의가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검색 시스템 개선 등 제도개선에 투입되는 예산도 충분히 지원되길 바랍니다.

사법의 책무성 강화와 판결문 공개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건국대학교)

1. 사법의 민주화: 사법의 책무성 확보

촛불집회를 거쳐 오는 당대의 최대 의제는 실질적 민주화이다. 적폐의 청산이나 농단된 국정의 재건이라는 과제 이상으로 대두되는 이 시대의 최대과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능동적·유권적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역량(capacity)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개혁의제들을 발굴하고 또 실천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표한다"라는 말로 응축되는,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의 의지를 제대로 구현해 내는 체제를 일구어낼 필요가 있다.

사법의 민주화 내지는 민주적 사법의 구축 또한 분명 이 촛불 이후의 개혁과제로서 의미심장하다. 비록 그 요청의 대부분은 검찰을 향해 있기도 하지만, 이 검찰을 통제하고 규율하여야 할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법원 또한 그 나름의 비판과 개혁의 요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민주화의 의제들은 그대로 사법체계에 결합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사법을 지배하는 3대원칙-전문성, 독립성, 민주성-은 다른 어떤 통치의 단위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 보완적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대립하고 상호 모순적인 일종의 안티테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의 민주화라는 개념은 다른 국가기관-통치체제-를 향한 민주화의 요청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사법의 민주화는 언제나 사법의 독립-특히 사법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요청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사법의 독립성과 사법의 민주성은 대체적인 경우에 서로 충돌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법관이 자신을 둘러싼 시민들의 의사-이는 시민정치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이다-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즉, 전자를 강조할경우 후자의 요청은 희생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사법관의 지배라는 반민주적, 반정치적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나타난다. 반면 후자를 강조할 경우 시민들의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재판과판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 내지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이 훼손될가능성이 야기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법에 관한 한 민주성의 요청이라는 언술보다는 책무성 (accountability)라는 말을 선호하게 된다. 이 개념은 대체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자는 그 결

정을 다른 사람-상급자, 소비자, 또는 인민 등-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그들의 판단에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사용된다.1)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에 임하되 그 결정의 과정과 또 결정 이후-집행의 과정도 포함한다-에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혹은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써 그 결정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는 체계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다.

M. Cappelleti2)가 말하는 응답형/소비자(고객)지향형 책무성모델은 이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책무성모델을 외부기관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위주로 하는 억압형, 내부적으로 분리된 기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감시·통제하는 분리형, 정치적·사회적 책무성과 법적 책무성의 결합형태인 응답형/소비자(고객)지향형 등으로 세분하여 설명한다. 이 중 후자의 소비자 지향형의 응답모델은 다면적 책무성 보장체제로서 조직내부적 통제와 집단내부적 통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통제가 복합된다. 즉, 법원과 법관의 재판이나 결정에 대하여 동료법관들은 물론 다른 법률가 혹은 법(률가)공동체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적 책무성과, 의회, 행정부, 언론 등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의미하는 정치적 책무성, 그리고 법률소비자(고객)로서의 당사자나 증인 등 관계인들과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하여개방성과 응답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책무성-또는 법적·민주적 책무성이라 명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민주적 사법을 향한 개혁의 지향점은 바로 이런소비자 지향형의 복합모델에 맞춤 필요가 있다.

2. 판결문 공개

법원의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즉, 심리는 예외적인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을지나, 판결은 그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공개도록 강제한다.

이런 헌법의 명령이 요구하는 바는 너무도 명료하다. 흔히들 이 공개재판주의 혹은 그 상소(常素)로서의 판결의 공개를 두고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판

¹⁾ 이는 프랑스인권선언(1789) 제15조에서 규정한 공행정작용에 대한 보고요구권과 직결된다.

²⁾ M. Cappelleti, "Who Watches the Watchmen? A Comparative Study of Judicial Responsibility,"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31 No.1(1983), 61쪽 이하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 이면 에 존재하는,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은 이런 외면적 의미를 넘어선다. 비록 우리 헌법에는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대명제에 따라 국민이 직접 사법관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³⁾ 적어도 주인(principal)으로서의 국민이 대리자(agent)로서의 법관을 감시하고 나름의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치의 실천이다. 판결의 공개는 국민들이 판결의 내용과 그 이유라는 문언상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그 판결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법의식 및 그 결과로서의 법감정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통로이자 토대가 된다. 주지하듯 법전법(law in book)은 상당 부분 판결을 통해 현실법(law in action)으로 드러난다. 무엇이 법인지는 법전의 글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쓰여져 있는 것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사법체계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의 법치 체계이다. 일반인들은 법전법으로써 법을 인식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문을 통해 획득하는 현실법으로써 그리한다. 그런데 판결문이 알려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 법의 세계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어진다. 그리고 이 소외로 인하여 법치국가의 체계는 대중의 지배가 아니라 사법관의 지배, 그것도 아주타락한 형태의 사법관료의 지배로 전략해 버리게 된다.

그래서 캐나다의 최고법원도 법원절차의 공개야말로 자국의 사법시스템의 우열을 가리는 시금석(cornerstone)이라고 하면서 캐나다 인권헌장(Candc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2조(b)에 의하여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 발현태라고 규정한다. 즉, "법원의 작동에 대하여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명백하게 이 헌장 제2조(b)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의 보호영역안에 포함되며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일반 공중이 법원에 관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마찬가지다."4)라고 선언한 바 있다. 즉, 법원 절차가 공개될 경우 일반 공중들은 자의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의가 집행되며, 법원이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절차에 대한 일반 공중들의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사법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5)

요컨대, 법원의 절차 공개 특히 판결문의 공개는 판결문을 대중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① 정부 및 공공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② 재판제도의 진실성(integrity)과 공정성(fairness)

³⁾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매우 간접적이고 예외적인 민주적 통제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⁴⁾ f Canadian Broadcasting Corp. v. New Brunswick (Attorney General), [1996] 3 S.C.R. 480 at para. 23.

⁵⁾ Supreme Cour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A GUIDE TO ACCESSING COURT PROCEEDINGS AND RECORDS FOR THE PUBLIC AND MEDIA, 2019. 5. in: https://court.nl.ca/supreme/forms/2018%2001%20 09%20-%20A%20Guide%20to%20Accessing%20Court%20Proceedings%20and%20Records%20for%20th e%20....pdf, p.4.

에 관한 공중의 자신감 확보할 수 있으며, ③ 법원의 절차에 관한 공중의 이해가 향상되고, ④ 재판제도를 공중이 심사할 수 있으며, ⑤ 책임감과 정당한 지배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부패, 권력의 남용 및 잘못된 집행 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⑥

실제 이 판결의 공개제도는 재판의 당사자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라는 말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정보접근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국민의 알 권리의 문제로 전이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설명의 의무7)의 이행문제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로서의 사법체계가 보다 민주적이고 책무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단초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그간의 우리 사법현실은 이러한 헌법명령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벗어나 있었다. 그동안 법원이 자발적으로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소수의 사건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나마도 일반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보여주기로 결정한 사건에만 일반인들이 접근가능했다. 그러다가 2011. 7. 민·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2015. 1. 1.부터 확정된 판결에 한하여 법원이 익명화조치를 완료한 후에야 조금씩 공개되었다. 물론 그것도 온라인 등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법원도서관에서 사건번호 중심의 한정된 검색과 신청의 절차를 거치고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겨우 원하는 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가장 저급한 수준의 물리적·공간적·심리적·경제적 장벽을 쌓아 두고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런 제한적이고 통제일변도의 판결문공개제도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며 하나의 통합된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법원의 판결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었다. 하지만, 그 수준은 헌법의 공개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준하는 수준의 접근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전히 과도한 부담(undue burden)8)의 장벽은 남아 있다. 오로지 확정된 판결만이 그러한 검색, 조회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도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판결이나 2015년 이전해 확정된 민사·행정판결등은 여전히 종래의 방식에 준하는 절차를 경유하여야 한다. 또 비용부담 역시 잔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번에 열람가능한 판결수도 5건으로 통제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수준에서 보자면 절반의 판결문공개제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⁶⁾ 강인철, "판결문 공개의 대의와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제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2017. 12. 5.

⁷⁾ 프랑스 인권선언 제15조 참조

⁸⁾ 이 과도한 부담은 단순히 판결문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비용측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형사판결문의 검색을 막는 것은 그에의 접근이 자유로운 검사측에 비하여 피고인측(혹은 그 변호인측)이 참조가능한 판결자원의 범위를 현저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여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도모되어야 할 무기대등의 원칙 자체가 장애상태에 빠지게 된다. 위의 강인철의 토론무 참조.

이런 현실태는 그 현저한 개선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다. 우선 판결문 공개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에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위헌의 논란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 제109조는 "판결"의 공개를 명하고 있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만의 공개를 명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 제109조에서 일반국민들은 판결문에 접근할 권리가 파생되어 나온다고 본다면, 이 민소법의 규정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국민의 파생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확정판결문조차도 확정시기에 따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는 법률규정의 공개방법을 벗어나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방법으로만 공개되는 것 역시 법률위반이라 할 수 있다. 분명히 법률에서는 "인터넷"을 규정하고 있고 이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개방된 통신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0》

실제 어떻게 보더라도 현재와 같이 최극단의 수준으로 위축된 판결문공개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사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도, 판결의 공개주의라는 헌법명령의 측면에서도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 법원의 자의적·획일적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판결문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문제나 영업비밀의 문제는 나름 고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판결문의 일반공개를 가로막는 이유는 결코 되지 못한다.11) "비실명"처리의 방식이든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전환하는 방식12)이든 나름의 아이디어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13)

거듭 말하지만 현재의 국면은 모든 국정의 민주화가 최대현안이다. 사법개혁의 논의 또한 마찬가지다.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것이 사법개혁의 요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판결문공개는 그 가장 기본적인 단초를 마련한다. 그것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야만 시민사회의 법적 수요들이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사법과정에 수용될 수 있고 또 그 결과로

⁹⁾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확정된 판결만큼이나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는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모든 법관들이 모든 판결을 임의로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법원시스템 자체부터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¹⁰⁾ Wikipedia는 인터넷을 "상호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들의 전지구적 시스템"(the global system of interconnected computer networks)으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라고 설명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

¹¹⁾ 법원은 기존의 판결에 대해서는 공개를 위한 비실명화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해 왔기에 이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비실명화조치가 예상외로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능한 한 조속이 이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¹²⁾ 사실 판결문공개와 관련하여 법원의 무성의함은 비실명화조치의 지체와 함께 향후의 대책마련에도 있다. 재판의 과정에서 미리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실명화되거나 혹은 미국식으로 가명화의 작업을 거친 공개용의 판결문을 별도 작성하는 체제를 마련한다면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판결문은 약간의 가공만 거쳐면 곧장 공개대상이 될 수 있게된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도 이에 대한 계획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¹³⁾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개정안(의안번호 제5780호)은 확정전의 판결도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판결서 내의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써 검색가능하고 기계적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써 시민사회의 법감정과 정의 의식이 판결로써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늦출일이 아니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사법과정이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구성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판결문의 공개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체제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국민의 알권리의보장이라는 차원 이상으로 법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사법의 틀을 구축하는 출발선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판결문의 공개를 위한 법률의 제정은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회 또한 이 입법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법원과 함께, 입법자의 의지가 새삼 절실한 지점이다.

토론문

백상준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I. 들어가며¹⁾

- □ 판결서 공개와 관련하여 제20대국회에는 총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안 2 건²⁾, 주광덕의원안 1건³⁾)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미확정(판결 선고 후 확정 전) 판결서의 공개입니다.
 - 그 외에도 금태섭의원안에서는 법원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를 삭제하고, 판결 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 태⁴으로 제공하는 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방식을 현행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은 기 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판결서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에의 접근권을 강화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 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이와 더불어 최근 판결서가 데이터마이닝⁵⁾의 원시 자료(raw data)로 사용되어 소위 리걸테크⁶⁾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¹⁾ 자세한 내용은 '백상준,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의 개선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4. 15.' 참조

²⁾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5780)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5782)

³⁾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5086)

⁴⁾ 현재 제공되는 파일의 형식은 수정·변환이 어려운 반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예: hwp, xls)는 수정·변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참조

⁵⁾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는 기술입니다. 이로써 수많은 법률·판례를 검색·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⁶⁾ 리걸테크(Legal Tech)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Ⅱ. 검토의견

1. 판결서 제공 형태 - 기계 판독 가능성

송오섭	발제자님까	에서는 판	판결서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편집된	판결서가	악용될	우려'를	근거로	. 다음괴	ł 같이 !	부정적인	의견을 제	디하니타	그 있습
니다.										

판결서를 다운로드한 경우 기계판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다수의 판결서를 다운받아 필요 시 검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판결서의 편집·수정도 가능하게 되어 편집된 판결서가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면,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판결서를 제공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 □ 그러나 판결서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판결서를 기계 판독이 어려운 형태로 제공한다고 하여 과연 판결서의 편집·수정 가능성이 소멸하는지 의문입니다.
 - 현대 사회는 편집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미지 형태의 파일이라 할지라도 편집·수정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 따라서 판결서 편집·수정을 통한 악용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당해 판결서가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든 그렇지 않든 편집·수정 행위의 용이성에 대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편집·수정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둘째, 판결서 제공 형태에 따른 이익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결서 제공형태에 관한 현 제도는 판결서의 편집·수정을 통한 악용 가능성을 일부 낮추는 장점은 있습니다.
 - 반면, 재판준비나 학술연구, 리걸테크에의 이용 등 측면에 있어서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위 장·단점을 형량할 때 현행과 같이 판결서를 기계 판독이 어려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 셋째, 현 제도는 대형로펌과 소형로펌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현 제도에 의하더라도 이용자 측에서 재정·인력을 투여한다면 판결서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OCR(Optical Character Reader)을 이용하거나 수작업(타이핑) 등을 통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결국 현 제도는 위 파일 변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을 보유한 대형로펌과 그렇지 않은 로펌 간의 정보 격차를 유발하는 부정적 효과를 과도하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검색·열람 대상 확정 판결서 확대 문제

- □ 송오섭 발제자님께서는 2012. 12. 31. 이전에 확정된 형사판결서와 2014. 12. 31. 이전에 확정된 민사 등 판결서도 인터넷 검색·열람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 동 발제취지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으로 현 제도의 제정 배경이 언급된 문헌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 관련 문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와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 등 판결서만이 공개대상으로 규정된 이유는 사생활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에 모두 게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비추어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류별(형사·행정·민사 등)로 게시의 시기를 달리 정하는 방안(검토의견).

자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중 법원 소위자료, 2011, p.30.

3. 수수료 문제

□ 이용재 발제자님께서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비실명처리가 이루어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으며, 국민세금이 투입되어 작성된 공문서로, 판결을 공개한 다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생각하면, 학술연구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u>1건당 1,000원의 수수</u>로는 폐지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한 의견은 판결서 공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수수료를 폐지할 것인지 또는 얼마만큼 감액할 것인지)에는 추가적으로 영리 목적의 열람과 비영리 목적의 열람을 구분하여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접속 가능한 웹브라우저 문제

- □ 발제문에서는 특별히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가 확대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외 웹 브라우저로 접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인터넷익스플로러 이외의 환경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나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 율이 높지 않은 점⁷⁾을 고려할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한 접근 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⁷⁾ 국내 웹 브라우저 점유율은 1위가 크롬(63.6%)입니다. (2019년 4월 기준)